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1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민홍철 · 허성무 · 이재강
백혜련 · 정준호 · 손명수
한민수 · 신영대 · 송재봉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 ② 자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부 또는 모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결정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⑥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자의 성과 본을 정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와 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성과 본은 같게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781조제7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781조제8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781조제9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 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 다.	② 자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협의를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는 부 또는 모 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여 줄 것을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 은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결정의 기 한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u><신 설></u> ④ ~ ⑥ (생 략) <u><신 설></u>	<u>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u> ⑥ <u>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u> <u>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u> <u>로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u> <u>른 일방이 자의 성과 본을 정</u> <u>한다.</u> ⑦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⑩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u> <u>부와 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u> <u>든 자의 성과 본은 같게 정하</u> <u>여야 한다.</u>
--	--